

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 세칙

제정 2016. 7. 5.

개정 2017. 4. 4.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(이하 “자문위원회 운영 규정”이라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문 적용항목 등) ①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적용항목(이하 “적용항목”이라 한다.)을 적용한 도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적용항목 중 권장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설계도서 작성 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며, 권장항목은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주와 협의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 (자문 운영회비) ①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따른 운영회비는 별표2과 같다. <개정 2017.4.4.>

제4조 (자문) ① 자문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적용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문한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5조 (인증건축물 심사위원회 구성) ① 인증건축물 심사위원회는 10명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인증건축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회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.

② 인증건축물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 방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6조 (인증건축물 선정 등) ① 인증건축물 심사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건축물 중 예비 인증건축물을 선정한다.

② 인증건축물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예비 인증건축물 중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

중 인증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다.

-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증건축물에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.
- ④ 협회는 인증건축물의 심사 및 인증마크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별표3에 해당하는 신청료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 <2016.7.5. 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4.4.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적용항목

분 류	제 목	CODE	내 용	
A 건축물의 계획 부분	001	대지의 사전 현황 조사	A001-1	대지 및 대지주변의 사전 현황 조사
	002	건축선의 지정	A002-1	건축선 지정 (도로폭 확보)
			A002-2	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
			A002-3	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
	003	대지안의 공지	A003-1	건축선에서 띄우는 거리
			A003-2	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
	004	건폐율	A004-1	건폐율의 적용
	005	용적률	A005-1	용적률의 적용
	006	건축물의 높이 제한 (정북방향)	A006-1	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(정북방향)
	007	건축물의 높이 제한 (채광방향)	A007-1	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(채광방향)
	008	거실의 반자 높이 등	A008-1	거실의 반자 높이
			A008-2	다락의 층고
	009	층간소음방지	A009-1	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
	010	발코니의 등의 구조변경	A010-1	발코니 등의 구조변경
			A010-2	방의 최소 폭 (권장)
	011	창문 등의 차면시설	A011-1	창문 등의 차면시설
012	조경	A012-1	대지의 조경	
		A012-2	옥상조경 (권장)	
		A012-3	벽면녹화 (권장)	
013	주차계획	A013-1	주차 폭 및 배치	
		A013-2	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실 설치	
014	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	A014-1	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	
015	자전거 보관대 설치	A015-1	자전거 보관대 설치	
016	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	A016-1	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(권장)	

분 류	제 목	CODE	내 용	
B 건축물의 구조 및 생활 안전 부분	001	주출입구 접근로	B001-1 주출입구 접근로의 단차 제거 또는 경사로 설치 (권장)	
	002	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분리	B002-1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분리 (권장)	
	003	장애인 전용주차구역	B003-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	
	004	주출입구 안전공간 확보	B004-1 주출입구 안전공간 확보 (권장)	
	005	주출입구의 안전시설	B005-1 주출입구의 안전시설 : 캐노피 (권장)	
	006	출입문의 끼임 방지	B006-1 출입문의 끼임 방지 조치 (권장)	
	007	계단 등의 유효너비	B007-1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	
	008	난간의 설치	B008-1	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노대 등에 있는 난간
			B008-2	계단의 난간
			B008-3	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
	009	오염방지턱	B009-1 계단, 난간의 오염방지턱 (권장)	
	010	계단실의 축광제 등의 활용	B010-1 계단실의 축광제 등의 활용 (권장)	
	011	미끄럼방지용 바닥마감재	B011-1	진입부분, 공용 복도, 공용 계단 등의 미끄럼 방지용 바닥마감재 (권장)
			B011-2	화장실, 욕실, 샤워실, 조리실 등의 미끄럼 방지용 바닥마감재 (권장)
	012	안전유리 등	B012-1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의 안전유리	
	013	설비 배관 등	B013-1	설비배관 설치공간 확보 (권장)
			B013-2	배관의 구조체 관통시 안전조치 (권장)
			B013-3	배관의 유지관리 (권장)
	014	건축물의 외벽 두께 확보	B014-1 건축물의 외측 내력벽의 두께 (권장)	
	015	켄틸레버 슬라브의 보강조치	B015-1 켄틸레버 슬라브의 보강조치 (권장)	
016	내력벽체의 구조 안전성	B016-1 내력벽체의 구조 안전성 확보 (권장)		
017	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	B017-1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(권장)		
018	옥상 안전 사다리 설치	B018-1 옥상 안전 사다리 설치 (권장)		
019	투시형 승강기	B019-1 투시형 승강기 (권장)		
020	응급벨의 설치	B020-1 응급벨의 설치 (권장)		

분 류	제 목	CODE	내 용
C 건축물의 에너지성 능 부 분	001 외벽 단열재 설치	C001-1	외단열
		C001-2	내/외 복합단열
		C001-3	내단열
	002 열반사단열재 설치	C002-1	열반사단열재 설치
	003 외단열마감공법	C003-1	외단열마감공법 (EIFS)
	004 최상층지붕 및 최하층바닥 단열재 설치	C004-1	최상층지붕의 단열재 설치
		C004-2	최하층바닥의 단열재 설치
	005 지표에 면한 최하층바닥 단열재 설치	C005-1	기초부위의 단열재 설치
	006 바닥난방인 층간바닥의 단열조치	C006-1	바닥난방인 층간바닥의 단열조치
	007 바닥난방부위 단열재 설치	C007-1	바닥난방인 층간바닥의 단열재 설치
		C007-2	바닥난방인 최하층바닥(외기간접)의 단열재 설치
		C007-3	바닥난방인 최하층바닥(외기직접)의 단열재 설치
	008 개별점포 출입문의 단열조치	C008-1	개별점포 출입문의 단열조치
	009 계단실 및 승강로에 면한 거실의 단열조치	C009-1	계단실에 단열조치를 한 경우 (공동주택 외)
		C009-2	계단실에 단열조치를 한 경우 (공동주택)
		C009-3	계단실의 단열조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(공동주택)
	010 방풍구조의 단열조치 및 예외대상	C010-1	방풍구조가 냉난방공간에 접하는 경우 단열조치
		C010-2	방풍구조 예외대상
	011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창의 기밀성능	C011-1	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창의 기밀성능
	012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단열성능	C012-1	창의 단열성능 (공동주택 외)
		C012-2	창의 단열성능 (공동주택)
		C012-3	문의 단열성능
013 비난방공간 외피의 단열조치	C013-1	비난방공간 외피의 단열조치	
014 단위세내 내에 설치되는 욕실·현관의 단열조치	C014-1	주택 욕실의 외벽 단열조치	
	C014-2	바닥난방을 하는 욕실의 바닥 단열조치	
015 외단열 공법의 채택	C015-1	외단열 공법의 채택 (권장)	
016 차양장치 설치	C016-1	차양장치 설치 (권장)	
017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	C017-1	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(권장)	
018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	C018-1	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(권장)	
019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	C019-1	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(권장)	
020 일괄소등스위치 사용	C020-1	일괄소등스위치 사용 (권장)	
021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	C021-1	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(권장)	
022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설치	C022-1	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설치 (권장)	

분 류	제 목	CODE	내 용	
D 건축물의 방재 부문	001	내부의 마감재료	D001-1	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의 마감재료
	002	외부의 마감재료	D002-1	상업지역 (근린상업지역은 제외)의 건축물
			D002-2	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축물
	003	내화구조	D003-1	내화구조 대상시설
	004	방화지구 안의 건축물	D004-1	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
	005	방화구획 등의 설치기준	D005-1	방화구획 등의 설치기준
	006	복도의 너비 설치기준	D006-1	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
	007	경계벽의 구조	D007-1	경계벽의 대상 및 구조
	008	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	D008-1	통로의 너비 및 길이
	009	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	D009-1	동일 건축물내 복합용도의 제한
	010	배연설비	D010-1	건축물의 배연설비
	011	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	D011-1	단독주택
			D011-2	공동주택 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)
	012	완강기	D012-1	완강기의 설치
	013	관람석 등으로 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	D013-1	관람석 등으로 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
	014	대피공간 확보	D014-1	아파트의 대피공간 확보
015	출입문 계획	D015-1	세대 및 호별 출입문 계획 (권장)	
016	계단의 설치	D016-1	직통계단의 설치	
		D016-2	피난계단의 설치	

분 류	제 목	CODE	내 용	
E 건축물의 범죄예방 부문	01	주출입구의 자연적감시	E001-1	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주출입구 계획 (권장)
			E001-2	반사경,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 (권장)
	02	담장	E002-1	완전개방형 혹은 투시형 담장의 설치 (권장)
	03	외부인 출입 통제 시설	E003-1	공동출입문의 외부인 출입통제 (권장)
	04	출입문에 미러시트 등의 조치	E004-1	주출입문에 미러시트 등의 설치 (권장)
			E004-2	엘리베이터 내부에 거울 설치 (권장)
	05	우편수취함 설치	E005-1	우편수취함 설치 위치
	06	무인택배보관함 설치	E006-1	무인택배보관함 설치 (권장)
	07	출입문 및 창문의 침입방지조치	E007-1	출입문 및 창문의 침입방지장치 (권장)
	08	옥외배관 등의 침입방지조치	E008-1	창문 등 개구부로부터 옥외배관 이격 (권장)
			E008-2	옥외배관의 방범덮개 설치 (권장)
	09	검침용 기기의 옥외설치	E009-1	전기, 수도, 가스 등의 검침용 기기의 옥외설치 (권장)
	10	사각지대 등의 대한 조치 - 조명	E010-1	조명 또는 반사경의 설치 (권장)
	11	사각지대 등의 대한 조치 - CCTV	E011-1	건물 내 외부 CCTV 설치계획 (권장)
	12	계단실 또는 승강기홀의 자연적 감시	E012-1	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계단실 또는 승강기홀 (권장)
	13	지하주차장 범죄예방	E013-1	지하주차장의 가시권 확보 (권장)
			E013-2	지하주차장의 비상벨 설치 (권장)
	14	저층부 상점의 입면	E014-1	저층부 상점의 투시형 입면 (권장)
15	개방형 지하공간의 출입통제	E015-1	개방형 지하공간의 무단출입통제시설 (권장)	
16	건축물 용도별 범죄예방기준 - 다중생활시설	E016-1	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범죄예방기준	
17	건축물 용도별 범죄예방기준 - 문화 및 집회시설 등	E017-1	문화 및 집회시설등에 대한 범죄예방기준	
18	건축물 용도별 범죄예방기준 - 일용품 소매점	E018-1	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범죄예방기준	

[별표 2]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운영회비

면 적	자문 운영회비 (원/건)
660m ² 이하	100,000
660m ² 초과 ~ 1,000m ² 이하	150,000
1,000m ² 초과	200,000

1. 설계자가 협회미가입자 또는 타지역 회원인 경우, 시스템 사용 및 각종 자료 열람에 따른 운영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.
2.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문대상일 경우, 상기 운영회비의 50%를 적용한다.
3. 자문대상이 대수선일 경우, 면적에 관계없이 최저 운영회비를 적용한다.

[별표 3]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인증건축물 신청료

구 분	신청료(단위 : 원)
건 당	200,000